

의안번호	2204931
의 퇴 인	이상희의원
회 답 일	2024. 12. 3.
추 계 번호	24B4540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제2항 신설(어업자에 대한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로 폐업지원금 기준액</u> 을 정하고, 제1항에 따라 감척어업자가 지급받는 <u>폐업지원금</u> 이 기준액 미만인 경우 그 <u>차액</u> 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3조제2항 신설(어업자에 대한 지원)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사업 개요

- **현행법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시행중이며, 감척어업자에 대해 감척지원금 등 지급중
- **(목적)**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

1) 법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 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어선·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감척지원금) 개별 감척대상자별 평년수익액의 3년분(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매입지원금)를 감정평가하여 감척지원금 산정·지급
- (지원율) 근해어선(국비 100%), 연안어선(국비 80%, 지방비 20%)
- (실적) '94년부터 '23년까지 21,480척(21,996억원) 감척

※ [참고자료 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요 및 현황,
 [참고자료 2]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추진 현황,
 [참고자료 3] 2023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현황 참고

□ 최근 5년간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지급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연근해어선 폐업지원금 지급 현황: 2020~2024년

(단위: 척, 백만원)

구 분		연안어선(①)			근해어선(②)	합계(③=①+②)		
		국비 (80%)	지방비 (20%)	소계	국비(100%)	국비	지방비	합계
2020	척수	176	176	176	53	229	229	229
	폐업지원금	8,931	2,233	11,164	21,959	30,890	2,233	33,123
2021	척수	109	109	109	86	195	195	195
	폐업지원금	10,136	2,534	12,670	58,009	68,145	2,534	70,679
2022	척수	105	105	105	67	172	172	172
	폐업지원금	10,062	2,515	12,577	58,403	68,465	2,515	70,980
2023	척수	176	176	176	76	252	252	252
	폐업지원금	20,628	5,157	25,785	56,965	77,593	5,157	82,750
2024 (지급중)	척수	약 200	약 200	약 200	86	286	286	286
	폐업지원금	24,710	6,177	30,887	82,980	107,690	6,177	113,867
합계	척수	766	766	766	368	1,134	1,134	1,134
	폐업지원금	74,467	18,616	93,083	278,316	352,783	18,616	371,39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어업자에 대한 지원—폐업지원금 차액 지급(안 제13조제2항 신설)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연근해어업의 종류별·규모별로 폐업지원금 기준액을 정하고, 감척어업자²⁾가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기준액 미만이어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선박 수,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각 선박별 폐업지원금의 기준액 미만 여부 및 그 차액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함

$$\begin{aligned}\text{추가재정소요} &= \sum_{i,j,t} (\text{폐업지원금 차액 지급액}_{i,j,t}) \\ &= \sum_{i,j,t} [(\text{종류별·규모별 기준액} - \text{각 선박별 폐업지원금}) \\ &\quad \times \text{감척대상 선박 수}]_{i,j,t}\end{aligned}$$

- 이때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액 - 각 선박별 폐업지원금) > 0인 경우에 해당
- t 는 추계기간 5년,
- i 는 선박 종류: 연안어업(연안개량안강망, 연안통발어업, 연안자망어업, ..., 등),
근해어업(대형트롤어업, 근해채낚기, 근해자망, ..., 등)
- j 는 선박 규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개정안에 따른 폐업지원금 차액 지원비용은 연간 감척대상 선박 물량, 해당 선박의 생산물량, 어업경비, 종류별·규모별 폐업지원금 기준금액 등 구체적 자료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해당 자료의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2) 안 제13조(어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척어업자”라 한다)가 연근해어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라 어선·어구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자에 대하여 지원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개요 및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목적

-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조조정하여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과 어업 경영여건 개선을 도모

* 근거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 지원조건

- 근해어선(국비 100%), 연안어선(국비 80%, 지방비 20%)

□ 실적: '94년부터 '23년까지 21,480척(21,996억원) 감척

구 분	합 계		일반감척('94~계속)		국제감척('99~'02)	
	척수	금액(억원)	척수	금액(억원)	척수	금액(억원)
합 계	21,480	21,996	20,172	15,553	1,308	6,443
연안어선	18,509	7,481	18,509	7,481	—	—
근해어선	2,971	14,515	1,663	8,072	1,308	6,443

□ 감척대상자 지원

- 개별 감척대상자별 평년수익액의 3년분*(폐업지원금) 및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매입지원금)를 감정평가하여 감척지원금 산정·지급

- (산정근거)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10
- (산정방법) 평년수익액 = 평균어획량(3년)* × 평균 연간판매단가(1년) - 평년어업경비(1년)**
- * 단, 변동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해당연도만큼 소급하여 기산한 3년 적용
- ** 단, 변동폭이 전년도 대비 1.5배 이상일 경우 인근 비슷한 규모, 같은 종류 어업 2개이상의 평균 적용

□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 통상임금의 최대 6개월분*
 - * 감척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있으며, 선정통보일까지 2개월 이상 근로계약 유지, 노무 제공 등을 지급대상 조건을 충족하는 선원에 대해서 근로기간에 따라 「선원법」에 따른 통상임금의 2~6개월분 지급
- 직권감척 불응자는 면세유, 영어자금 신규융자 지원 축소 조치
 - * 면세유·신규융자 조정율: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이후 50%

□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결산 현황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예결산 현황: 2022~2025년(안)>

(단위: 백만원)

사업명	주요내용	2022		2023		2024		2025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안
연근해어선감척(지자체) (3145-300)		120,446	120,359	134,078	118,411	162,607	162,607	220,567
- 연근해 어선감척	연근해 어선을 수산 자원에 적합한 수준 으로 감척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 반 조성	119,946	119,859	133,578	117,911	162,107	162,107	220,067
-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연근해어업 구조개 선 및 지원대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고 자 실태조사 지원	500	500	500	500	500	500	5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연도별 연근해어선 감척추진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단위: 척, 백만원)

구분		합계	일반감척			국제감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합계	척수	21,480	20,172	18,509	1,663	1,308	1,308	8,885	52
	금액	2,199,657	1,555,389	748,119	807,268	644,270	572,982	69,906	1,382
'94	척수	54	54	54	0	0	0	0	0
	금액	4,910	4,910	4,910	0	0	0	0	0
'95	척수	117	117	111	6	0	0	0	0
	금액	10,410	10,410	9,113	1,297	0	0	0	0
'96	척수	136	136	110	26	0	0	0	0
	금액	13,656	13,656	7,991	5,665	0	0	0	0
'97	척수	135	135	48	87	0	0	0	0
	금액	27,200	27,200	4,227	22,973	0	0	0	0
'98	척수	159	159	63	96	0	0	0	0
	금액	27,513	27,513	5,287	22,226	0	0	0	0
'99	척수	730	78	0	78	652	652	2,415	27
	금액	357,185	15,180	0	15,180	342,005	330,844	10,654	507
'00	척수	140	109	36	73	31	31	369	0
	금액	31,162	22,500	3,695	18,805	8,662	1,566	7,096	0
'01	척수	586	77	55	22	509	509	4,660	25
	금액	248,914	10,811	5,742	5,069	238,103	196,786	40,442	875
'02	척수	280	164	21	143	116	116	1,441	0
	금액	96,783	41,283	3,805	37,478	55,500	43,786	11,714	0
'03	척수	60	60	16	44	0	0	0	0
	금액	19,011	19,011	1,504	17,507	0	0	0	0
'04	척수	698	698	639	59	0	0	0	0
	금액	17,384	17,384	6,672	10,712	0	0	0	0
'05	척수	841	841	841	0	0	0	0	0
	금액	33,300	33,300	33,300	0	0	0	0	0
'06	척수	1,598	1,598	1,598	0	0	0	0	0
	금액	50,278	50,278	50,278	0	0	0	0	0
'07	척수	2,922	2,922	2,836	86	0	0	0	0
	금액	129,417	129,417	100,000	29,417	0	0	0	0
'08	척수	5,512	5,512	5,081	431	0	0	0	0
	금액	323,610	323,610	169,462	154,148	0	0	0	0
'09	척수	1,811	1,811	1,724	87	0	0	0	0
	금액	82,118	82,118	62,957	19,161	0	0	0	0
'10	척수	1,267	1,267	1,210	57	0	0	0	0
	금액	65,686	65,686	49,308	16,378	0	0	0	0
'11	척수	759	759	744	15	0	0	0	0
	금액	34,753	34,753	31,151	3,602	0	0	0	0
'12	척수	368	368	359	9	0	0	0	0
	금액	16,676	16,676	15,103	1,573	0	0	0	0
'13	척수	402	402	391	11	0	0	0	0
	금액	19,914	19,914	16,896	3,018	0	0	0	0
'14	척수	380	380	374	6	0	0	0	0
	금액	20,197	20,197	17,717	2,480	0	0	0	0
'15	척수	371	371	358	13	0	0	0	0
	금액	23,289	23,289	16,851	6,438	0	0	0	0

구분		합계	일반감척			국제감척			
			소계	연안	근해	소계	어선감척	실업지원	어구비
'16	척수	348	348	335	13	0	0	0	0
	금액	21,502	21,502	15,686	5,816	0	0	0	0
'17	척수	291	291	287	4	0	0	0	0
	금액	21,502	21,502	19,413	2,089	0	0	0	0
'18	척수	294	294	292	2	0	0	0	0
	금액	18,828	18,828	13,988	4,840	0	0	0	0
'19	척수	373	373	360	13	0	0	0	0
	금액	32,772	32,772	20,867	11,905	0	0	0	0
'20	척수	229	229	176	53	0	0	0	0
	금액	74,650	74,650	11,164	63,486	0	0	0	0
'21	척수	195	195	109	86	0	0	0	0
	금액	124,913	124,913	12,670	112,243	0	0	0	0
'22	척수	172	172	105	67	0	0	0	0
	금액	119,546	119,548	12,577	106,969	0	0	0	0
'23	척수	252	252	176	76	0	0	0	0
	금액	132,578	132,578	25,785	106,793	0	0	0	0

주: '24년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은 추진중으로 향후 실적치 집계 예정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2023년 연근해어업 실태조사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³⁾

□ 연안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단위: %, %p)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증감률
어 선	마 력	마력	253.2	276.0	274.3	-0.6
	선 령	년	15.7	15.9	15.7	-1.1
조 업	항 차	회	164.1	158.5	161.0	1.6
	조업일수	일	142.4	140.2	142.1	1.3
	항차당 조업일수	일	0.9	0.9	0.9	0.3
선 원 임 금	내 국 인	명	1.9	1.7	1.9	13.6
	외 국 인	명	1.7	1.8	2.0	12.0
	내국인임금	천 원	27,991	26,917	28,209	4.8
	외국인임금	천 원	25,114	20,866	24,969	19.7
재 무 현 황	자 산	천 원	84,044	92,112	92,774	0.7
	부 채	천 원	10,717	13,940	10,825	-22.3
	자 본 금	천 원	73,327	78,172	81,949	4.8
	자산부채비율	%, %p	12.8	15.1	11.7	-3.4
	당좌자산부채비율	%, %p	369.6	158.7	244.4	85.7
수 지 현 황	수 익	천 원	97,676	111,101	105,210	-5.3
	비 용	천 원	45,962	57,714	55,616	-3.6
	어업이익	천 원	51,714	53,387	49,594	-7.1
	순이익률	%, %p	52.9	48.1	47.1	-1.0
	자산이익률	%, %p	61.5	58.0	53.5	-4.5
	총자본회전률	%, %p	127.3	133.2	123.7	-9.5
비 용 구 성	생산관리비	천 원	17,681	26,748	25,115	-6.1
	인 건 비	천 원	17,801	19,288	21,728	12.6
	판매관리비	천 원	3,760	3,355	2,661	-20.7
	감가상각비	천 원	3,996	3,952	3,225	-18.4
	기타잡비	천 원	2,723	4,371	2,887	-33.9
	수지비율	%, %p	49.2	55.4	54.9	-0.6
감 척 의 사	감척희망률	%, %p	7.3	15.9	14.0	-1.9
	감척만족도	점/5점	2.6	2.7	2.7	-0.2

* 모든 값은 소수점 2번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함. 이하 동일.

** 자산부채비율: 부채/자산×100, 당좌자산부채비율: 부채/유동자산×100, 순이익률: 이익/수익×100, 자산이익률: 이익/자산×100,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총자본×100, 수지비율: 총비용/매출액×100, 이하 동일.

*** 위 6개 지표와 감척희망률의 증감률은 직전년도(2021년) 대비로 단위는 %p임. 이하 동일.

3) 한국수산자원공단, 「2023 연안어업실태조사」, 2023.12.

한국수산자원공단, 「2023 근해어업실태조사」, 2023.12.

□ 근해어업 실태조사 총괄표

구 분		단위	2020	2021	2022	증감률(%)
어선	마력	마력	791.2	811.9	795.6	-2.0
	선령	년	16.6	16.7	16.8	0.4
조업	항차	회	94.1	88.8	93.7	5.5
	조업일	일	219.5	210.9	213.3	1.1
	항차당 조업일	일	2.3	2.4	2.3	-5.2
선원	내국인	명	6.5	6.7	6.1	-8.5
	외국인	명	5.4	5.7	5.4	-5.0
임금	내국인 임금	천원	42,148	46,901	42,150	-10.1
	외국인 임금	천원	23,943	25,373	24,352	-4.0
재무 현황	자산	천원	2,285,290	2,624,370	2,490,547	-5.1
	부채	천원	583,357	783,798	471,431	-39.9
	자본금	천원	1,701,933	1,840,572	2,019,115	9.7
	자산부채비율	%	25.5	29.9	18.9	-36.7
	당좌자산부채비율	%	221.2	481.1	206.3	-57.1
수지 현황	수익	천원	1,512,042	1,509,633	1,555,445	3.0
	비용	천원	1,125,119	1,209,766	1,301,400	7.6
	어업이익	천원	384,801	299,867	254,136	-15.3
	순이익률	%	25.4	19.9	16.3	-17.9
	자산이익률	%	16.8	11.4	10.2	-10.5
비용 구성	생산관리비	천원	435,965	482,462	636,763	32.0
	인건비	천원	445,884	475,181	425,459	-10.5
	판매관리비	천원	112,710	107,569	102,557	-4.7
	감가상각비	천원	30,685	32,352	22,661	-30.0
	기타 잡비	천원	117,876	112,203	113,961	1.6
감척 의사	감척 희망률	%	10.3	15.3	12.0	-21.5
	감척만족도	점/5점	2.2	2.7	2.3	-16.1

* 모든 값은 소수점 2번째 자리 이하에서 반올림

* 자산이익률: 이익/자산*100, 순이익률: 이익/수익*100, 자산부채비율: 부채/자산*100,
당좌자산부채비율: 부채/유동자산*100